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년 8월 22일

나. 제출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3년 8월 23일

라. 상정일자 : 2013년 9월 2일

제1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전 영 욱

나. 제안이유

-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기금의 설치, 용도 등 (안 제3조 ~ 제6조)
- 주민지원협의체 설치 등(안 제7조)
-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8조 ~ 제11조)
-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2조 ~ 제19조)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예산조치 : 2013년 본예산에 10억원 편성(비용추계서 붙임)
-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합의되었음.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박 희 중

○ 본 조례안은

-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3조에서 6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조성, 존속기한, 용도 등을, 안 제7조는 주민지원협의체 설치 등을, 안 제8조는 기금의 관리·운용을, 안 제12조에서 19조까지는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구미시 시립화장장 입지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장사시설에 대하여는 주민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므로 주변 지역 주민에게 인센티브 제공차원에서 소득향상과 복리증진 사업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 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